



국 토 교 통 부

수신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

(경유)

제목 질의회신(등록기준 대수 미달 시의 감차 가능여부)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렌터카연17-0221호(2017.12.21.)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.

☐ 질의요지

- 등록기준 대수 미달 시의 감차 가능여부

☐ 답변내용

-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감차하기 위해서는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35조에 의하여 준용하는 동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,
 -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동 조 제5항의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나,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.
- 한편,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8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3에 의하여 사업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되나,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.
- 위의 사항을 고려할 때,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, 감차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.

국토교통부장관



주무관 **김연우** 행정사무관 **김선욱** 과장 전결 2018. 1. 30.
신윤근

협조자

시행 신교통개발과-245 (2018. 1. 30.) 접수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/ <http://www.molit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3821 팩스번호 044-201-5579 / dusdn89@molit.go.kr / 비공개(5)

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.